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애*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정당방위 판단,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

* 본 연구는 김용애(2020)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제 1저자: 김용애,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 석사

‡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E-mail: mkim76@sookmyung.ac.kr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법원과 일반인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김병수, 2014; 하민경, 2019). 정당방위가 좁게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주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폭행 현장에 관히 끼어들면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데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방관하는 태도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김병수, 2014).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규정된 취지와는 달리 범법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박정난, 2018).

이 같은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방위를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정현미, 2000; 김슬기, 2017),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략하고 있다(박정난, 2018; 김병수, 2014).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싸움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음에 비해 법원은 이에 합당한 기준이나 설명은 생략한 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수, 2012, 2014, 2015; 김슬기, 2017; 김준호, 2016; 김태명, 2008; 박정난, 2018; 정현미, 2000).

정당방위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실제 일반인의 정당방위와 관련한 인식이 어떠한지, 혹은 실제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사회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경험적인 방

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원과 일반인과의 인식의 괴리가 있는 지점이 발견된다면 해당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김병수, 2014; 김준호, 김선애, 1991). 정당방위 인정에 일반인과 법원의 괴리가 존재함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에 일반인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은 어떠한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 나누어 이 요인들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해석하여 형사사법 판단에 함의를 주고자 한다.

정당방위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란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한 반격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정의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당방

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고(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7), 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즉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박정난, 2018). 현재의 침해는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7).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나 한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김태명, 2000). 상당한 행위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의는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의 정신과 ‘부정(不正) 대 정(正)’이라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인하여 방위행위자가 입은 피해와 가한 피해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비례성은 완화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김태명, 2000; 박정난, 2018). 상당성이란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임에도 법원은 동일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상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략한 채 결론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김병수, 2014; 이원상, 2015). 이에 법원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범 해석상의 재량권이 부여되어(박상기, 2009), 정당방위 성립을 제한하는 요건이자 일반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상당성 판단기준’에 일반 국민들이 이에 쉽게 공감할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김병수, 2014).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의 유형이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황들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는 형법 조항 자체로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하민경(2019)은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한 ‘긴급구조’ 형태로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홍진표(2017)는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사건에서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사례군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의 성립범위 및 정당방위 인정 범위의 한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최석운, 2010) 이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 유형은 우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한 상대방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가능하므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역시 정당방위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고(황정익, 2009; 하민경, 2019),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법원이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는 사례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다(양천수, 2019; 김슬기, 2017). 김경락(2014)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국가기관이 야기하는 부당한 침해의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의 정당방위 판단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다. 또한 김성천(1993)은 국가의 간섭이 배제

되는 절대적인 개인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정당방위가 법으로 만들어져, 경찰의 불심검문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존재하고 원용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민경 외 연구진(2019) 역시 정당방위의 유형을 자신, 타인, 국가기관 대항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고 있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정당방위 판례 역시 위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정당방위의 유형이라 명명하고자 하며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별 고찰은 정당방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살펴 보는데 유의미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자기방어와 관련이 있으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해 방위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과 관련이 높다. 즉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본능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방위행위자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과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려는 욕구 사이에서의 결정이 정당방위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Carlo, 2006; Carlo, Eisenberg & Knight, 1992).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타인을 목격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할 때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상황의 위협성과 본인이 개입되었을 때의 비용을 따져서 행동한다(Clark & Word, 1974).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방위행위자가 방위행위에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로 인해 방위행위가 필요한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상당했는지, 방위행위자가 입은 피해와 가한 피해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당방위 유형별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박순진(1998)에 의하면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인지 아닌지가 다투는 상황에 영향을 주며,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특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는 폭행에 나아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대항 정당방위 유형은 상대방이 공권력을 지닌 경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위행위에 나아갈지의 결정이 다른 유형들과는 다를 수 있고, 개인적 권리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아 정당방위 인정판단이 다른 유형들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로 유형을 나누고 일반인의 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의 대부분 판례가 자신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이고, 타인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은 실제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만 살펴보기로 한다.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의 내용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간 갈등 해결의 의미 외에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의미도 가지므로 일반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하민경, 2018). 일반인은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의 태도를 접하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심원은 재판 전 보도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재판 중에 제시된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비슷한 정보나 사건을 기초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rest, 1993; Ruva, 2010). 특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떠올리기 쉬운 정보를 토대로 그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용성 휴리스틱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Tversky & Kahneman, 1974; 공영호, 2016). 또한 어떤 정보가 기억에 남아 인출이 용이하면 신뢰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접해보지 않았던 정보는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김상준, 이진만, 신숙희, 장철익, 2010; 홍영호, 2016). 이에 일단 대상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이 형성되면,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어도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여 결국 자신의 기존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하려는 확증 편향적인 태도가 나타난다(Snyder & Swann, 1978; 김상준, 이진만, 신숙희, 장철익, 2010; 안서원, 2000).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도, 대부분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신념고수(Belief Perseverance)의 태도를 보인다(Anglin, 2019).

일반인인 배심원에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법을 사건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반대의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배심원로서는 더욱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Sales & Krauss, 2015).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배심원은 가용

성 휴리스틱적 사고에 의존하기 쉽다. 다시 말해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의심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확신감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결정내리가 쉬워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Anderson, 2012; 공영호, 2016). 특히 재판 당사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배심원로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자신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신적 혹은 양심상의 부담을 줄이고자 행동을 하게 된다(Kahneman, 2011; Anderson, 2012).

또한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 방식으로 보도하는지는 일반인이 대상에 대해 인식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Tewksbury, Jones, Peske, Raymond, & Vig, 2000; Valkenburg, Semetko, & DeVreese, 1999). 언론매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뉴스보도 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ennis & Merrill, 1996). 또한 언론의 기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긍정적 메시지보다 부정적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더 믿을 만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김효숙, 2010).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은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일반인은 피고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 전 언론 보도를 더 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Rozin & Royzman, 2001; Meffert, Chung & Joiner, 2006).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Big Kinds를 통해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뉴스 보도에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를 ‘정당방위 인정 방위행위’로 검색한 뒤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검색된 약 50건의 정

당방위의 보도 대부분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인정된다는 내용은 극히 예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된 기사 역시 ‘이례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된 기사는 전형적인 정당방위의 사건이 아닌 과잉방위, 특히 면책적 과잉방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언론에서 실제로 보도되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으므로, 사람들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평소에 접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 가능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언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사건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선입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일반인의 인식을 고찰하고, 이러한 인식이 정당방위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정당방위 판단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보를 떠올려 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방위 언론 기사의 내용이 정당방위 판단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판단자 개인 특성

정당방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는 우선 폭력 허용도를 들 수 있다. 폭력 허용도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의

미한다.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폭력 행동을 정당화하고 폭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또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폭력 허용도가 높은 사람은 실제로 신체적 폭력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장희숙, 조현각, 2001;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박순진, 박형민, 2005; Anderson, Benjamin, Wood & Bonacci, 2006). 폭력 허용도와 정당방위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같은 방위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판단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판단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 허용도에 따라 폭력을 수반한 행위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 상당한 정도의 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가 다를 수 있다. 폭력 허용도가 높으면 폭력적 행위도 필요하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폭력 허용도가 높은 참가자가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은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 참가자가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법적 태도 질문지(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LAQ)는 권위에 대한 지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등의 질문들을 통해 개인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의 정도를 파악한다(Boehm, 1968). 법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

고인에 대해 반감이 높아 구체적 사실들을 고려하기보다 단순하게 판단하여 높은 유죄편향을 보인다(Boehm, 1968; Moran, Comfort, 1982; Narby, Culter & Moran, 1993; Couch & Sundre, 2001). 또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더 엄격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Cowan, Thompson & Ellsworth, 1984).

정당방위는 형식적으로는 처벌되어야 하는 폭력적인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자가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고 유죄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즉 판단자가 법적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지면 정당방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은 참가자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낮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방위 관련 선행연구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식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성유리, 박광배(2012)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따른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상당성 존재하는 조건에서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한 집단은 정당방위를 높게 인정했다. 반면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집단은 상당성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방위 인정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에 연구진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성유리, 김종한, 박광배(2013)는 성유리 외(2012) 연구를 개인주의 가

치관이 강한 미국인으로 확장하여 다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월등히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다.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인의 경우에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내적요인에 귀인하여 정당방위를 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 성유리 외(2012)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귀인양식의 차이보다는 국가 간 법문화가 정당방위 판단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즉 미국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법의 일차적 기능으로 인식하여 정당방위를 관대하게 인정하였고, 한국인은 법의 기능을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한 범죄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나 중한 범죄에서는 정당방위를 배척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유리, 박광배(2018)는 한국과 법문화가 비슷한 일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은 한국인,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유사한 법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없어, 정당방위 판단의 차이가 법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정당방위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 상황은 다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지, 누구를 위한 정당방위였는지, 누가 상대방이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당방위

와 관련한 일반인의 판단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방위 판단에 판단자의 범문화의 영향 외에 폭력 허용도나 법적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당방위 판단에 법원의 태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판례가 수십 년간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언론을 통해 접한 일반인들은 이미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학습하여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애당초 회피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의 기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민경(2019)은 정당방위와 관련한 일반인의 법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평결을 고찰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의 정당방위 판단을 살펴보고, 법원과 배심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최종판결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방위 관련 사건은 총 32건이었고,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사건은 28건, 불일치한 사건은 4건이고 구체적으로는 싸움이 3건, 국가기관 대상 유형이 1건이었다. 연구진은 정당방위 판단을 싸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평의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역추적하였다. 하민경(2020)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 중 국민의 변화된 법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 2건을 선

정한 뒤, 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배심원들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내적 요인에 집중하여 판단하고,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논의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태도가 반영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또한 정당방위권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상황적 요소 뿐 아니라 개인적·내적 요인을 대등하게 고려하려는 해석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하민경(2020)은 이외에도 정당방위 영역 중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정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싸움에서의 정당방위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하민경(2019, 2020)은 정당방위를 유형화하여 접근함으로써 정당방위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중 법원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의가 달랐던 경우 그 판단의 결과에만 주목하거나 이를 범문화 등의 원인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에 주목한 뒤 실제 배심원의 개인적·내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심리학적 방법론을 접목하였다.

다만 하민경(2019, 2020)은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그 요소에 의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 경험적·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민경(2020)이 새로운 해석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는 ‘싸움’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인식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민경(2019, 2020)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기본 태도가 소극적임을 전제하고 있고, 일반인은 법원의 판단 원칙을 대부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될 것이므

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언론의 태도가 배심원의 정당방위 판단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과 정당방위 판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정당방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방위의 유형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들을 의미하며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당방위 유형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자기 방어 본능과 관련이 높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위해 방위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방위행위는 현재 위법한 폭행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고 다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경우는 타인을 돕기 위해 방위행위자의 행위가 필요했는지, 달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보다 더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에 비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유형은 방위행위자와 상대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

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주장되고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당방위 관련 신문 기사에 주목하여 제시된 신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험참가자가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험참가자는 정당방위에 대한 사건을 접하면, 기존에 정당방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전의 정보, 즉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후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를 제공받으면 떠올렸던 정당방위에 대한 기존의 정보와 비교하며 이를 읽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가 높은 비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제공받으면, 떠올린 정당방위에 대한 정보와 기사의 내용이 합치되므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정당방위가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제공받으면, 이는 기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내용에 기반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정보에 기반하여, 사건의 내용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찾거나 동일한 정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러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단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판단자 개인의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간의 정당방위는 상호 간 싸움의 유형과 유사하므로 개인의 폭력 허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경우 국가기관이라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법적 체계 내지 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자의 기본적인 신념과 태도 등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참가자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가기관이 지닌 권위를 인정하고, 경찰력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높고, 높은 유죄편향을 보일 것이므로, 참가자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가장 높고,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가장 낮을 것이다.

가설 2-1.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아, 정당방위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서 인정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2.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여, 정당방위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서 불인정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1. 폭력 허용도가 높은 참가자는 폭력 허용도가 낮은 참가자에 비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법적 권위주의가 높은 참가자는 법적 권위주의가 낮은 참가자에 비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를 제외한 후 총 6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성은 328명(50.4%), 여성 323명(49.6%) 이었고, 평균 연령은 44.46세($SD=13.46$)로 만 20세에서 만 6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절차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가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적 태도 설문지, 폭력 허용도 측정 문항, 정당방위에 대한 사전의 인식에 대해 응답하였다. 정당방위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무작위로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를 먼저 제공받은 후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이 때 제공되는 신문기사는 3가지 조건(무제시, 인정됨, 인정안됨)이고 이중 한 가지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 판단을 위

한 법적 지침을 읽은 후, 종속변인인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그 후, 정당방위 관련 추가적 질문에 응답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연구 참여에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정당방위 유형(정당방위 시나리오)

첫 번째 독립변인은 정당방위 유형이다. 정당방위 유형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하였다. 정당방위의 유형은 세 수준(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으로 조작되었다. 각 유형별로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정당방위 유형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당방위 재판 시나리오는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당방위 판결문을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실제 형사재판과 유사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개요,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검찰 측은 쌍방이 다투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임을 이유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시나리오는 모두 A4용지 1장 분량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형식적 분량을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양측의 주장이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 법률적 타당성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 3인(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으로부터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았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 11시경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서로 상당성에 대해 심급을 달리하여 여러 번 다투고 있어 다른 사안들에 비해 법원의 판단이 자세히 기술된바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 시나리오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의 시나리오와 모든 내용이 동일하나 싸움의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하여 방위행위에 나아간 부분만 다르게 조작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중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검문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재차 자전거를 막아서자 다툼이 일어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이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은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여 정당방위 인정에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살피보고자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고정2880 판결,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두 번째 독립변인은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다.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의 내용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의 기사는 세 수준(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됨 기사)으로 조작하였다. 아무런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통제조건인 무제시,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공 받는 인정됨 기사 조건,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는 내용의 인정 안됨 기사 조건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정당방위에 대한 신문기사는 정당방위 유형별 세 수준(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됨 기사)으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정당방위 기사의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되어 있는 정당방위 판결문을 수정하여 기사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인정됨 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의 신문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덤프트럭 기사 두 명이 서로 다투다, 이 중 한 명인 피해자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였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제공되었다. 반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인정 안됨 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에서는 인정됨 기사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

다는 기사로 구성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1024 판결).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정됨 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의 사건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두 덤프트럭의 기사가 다투자 이 중 한 덤프트럭에 동석하고 있던 지인이 방위 행위에 나아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상황으로 조작하여 기사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정당방위로 인정하였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로 구성하였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정 안됨 기사’는 인정됨 기사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이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인정됨 기사’의 신문기사는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자 저항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행위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이다. ‘국가기관 대항하는 정당방위-인정 안됨 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이다(서울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8고단573 판결).

기사 자극에 사용된 사안은 실제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바뀌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는 판례로 작성하여, 인정됨과 인정 안 됨의 어느 쪽으로 기사를 작성하여도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단자의 개인 특성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적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Couch & Sundre(2001)이 20문항으로 수정하고 Ross & Morera(2016)이 Anglo and Latino Americans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LA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LAQ를 사용한 국내 연구가 검색되지 않아,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타당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혼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Eigenvalue가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KMO척도는 .73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08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섭 등(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 중 본 연구의 시나리오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싸움 상황에서의 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순합산방식으로 총점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력 허용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4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특성과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둘째, 정당방위 유형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 조건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시 받은 기사의 내용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라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판단자 개인적 요인인 폭력 허용도와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이 328명(50.4%), 여성이 323명(49.6%)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129명(19.8%), 30대 130명(20.0%), 40대 130명(20.0%), 50대 124명(19.0%), 60대 138명(21.2%)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3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상태는 결혼이 362명(55.6%)으로 가장 높았다. 정당방위 유형별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s.*).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651)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328(50.4)
	여성	323(49.6)
연령	20대	129(19.8)
	30대	130(20.0)
	40대	130(20.0)
	50대	124(19.0)
	60대	138(2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13.6)
	대학교 재학	50(7.7)
	대학교 졸업	433(66.5)
	대학원 이상	80(12.3)
혼인	미혼/동거 중	265(40.7)
	결혼	362(55.6)
	이혼/별거/사별	24(3.7)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기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았다.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51명 중 581명(89.2%)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0명(10.8%)은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상대 경찰관에게 입힌 폭행 혹은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651명 중 428명(65.7%)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23명에 해당하는

34.3%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싸움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약 10% (70명)만이 모른다고 하였으나,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정당방위의 경우 약 34%(223명)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유형별로 정당방위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방위를 어느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넷 포털기사, TV 뉴스, 신문, 주변 사람들, 법원 홈페이지, 책, 기타(직접기재)로 구성된 복수 응답이 가능한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1명 중 84.5%(인터넷 포털기사 28.9%, TV 뉴스 49.5%, 신문 6.1%)에 해당하는 480명의 참가자가 정당방위를 알게 된 경로로 언론 보도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정당방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점(매우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부터 7점(매우 허용되어야 한다)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균 5.57($SD=0.93$)으로 응답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정당방위 제도와 관련하여, 전혀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1점(전혀 변화될 필요성이 없다)부터 7점(정당방위를 매우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평균 5.17($SD=1.00$)로 집계되었다.

정당방위 유형별 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 유형(시나리오)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방위 유형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2,651)=100.73, p<.001$). 그 과정에서 유형별로 참가자들의 폭력허용도, 법적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s.*).

우선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62.6%로, 불인정하는 비율 3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54.9%, 불인정하는 비율 45.1%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17.6%, 불인정하는 비율이 82.4%로 불인정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인정비율이 불인정에 비해 약 1.7배 높았고,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다른 유형과는

표 2. 정당방위 유형별 정당방위 인정 판단(N=651)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 판단		전체
	인정	불인정	
자신	132 (62.6%)	79 (37.4%)	211 (100%)
타인	123 (54.9%)	101 (45.1%)	224 (100%)
국가기관 대항	38 (17.6%)	178 (82.4%)	216 (100%)
전체	293 (45.0%)	358 (55.0%)	6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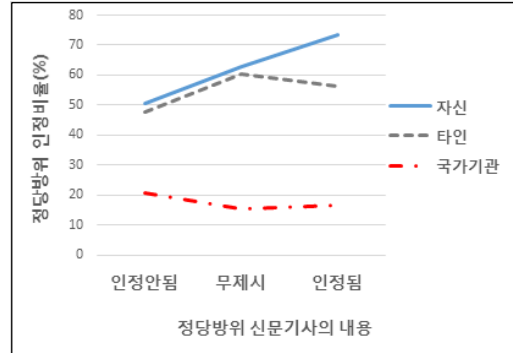


그림 1. 정당방위 유형과 신문기사의 내용별 정당방위 인정판단(N=651)

달리 불인정 비율이 인정 비율에 비해 약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당방위의 유형별로 정당방위 판단에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정당방위 유형별 시나리오 사이에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충분한 실익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유형별 신문기사를 제공받지 않았던 무제시 집단, 인정됨 기사 제시받은 조건, 인정안됨 기사를 제시받는 조건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집단의 정당방위 인정 비율을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제공되는 정당방위 기사의 내용이 정당방위 인정이었는지 불인정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기사를 제시받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제시받거나, 정당

방위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제시받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다만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인식은 기사를 접할 때는 물론 기사를 읽고 정당방위 판단을 내릴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방위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제시받은 기사와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라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참가자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를 1점(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인정된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의 응답이 기사가 제시되는 조건(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 됨 기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방위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은 조건($M=3.56$, $SD=1.17$),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받은 조건($M=3.44$, $SD=1.24$), 아무런 기사를 제시받지 않는 무제시 조건($M=3.42$, $SD=1.40$)에 따른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n.s.$). 즉 조건과 상관없이 참가자의 대부분이 현재 법원이 얼마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내용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즉, 정당방위 기사 조건(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 됨 기사)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

당방위 기사의 대부분은 개인 간의 정당방위(자신을 위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유형이고,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기사는 보도되는 기사의 양 자체가 월등히 적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역시 정당방위 유형별로 실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사전 인식을 묻는 응답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 간의 정당방위 유형(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으로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을 1,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을 2로 각 코딩하여 독립변인으로 유형을 투입하였고, 기사제시 조건이 없는 무제시를 1, 인정됨의 기사를 제시 받는 조건은 2, 인정 안 됨의 기사를 제시 받는 조건은 3으로 각 코딩한 뒤 독립변인에 투입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1,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한 후 종속변인에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0.51$, $p=.01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정 안 됨 내용의 기사는 정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사를 제시하지 않는 무제시 조건을 기준으로, 인정 안 됨 조건의 기사를 제시받을수록 정당방위 인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 $OR=.61$, $95\% CI=.38-.98$, $p=.04$). 이와 달리 인정됨 내용의 기사와 정당방위 유형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기사제시 조건에 따른 정당방위 판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df	OR	95% CI	p
	유형	-.32	.20	2.66	1	.73	.49-1.07	.10
정당방위	기사조건(무제시)			7.85	2			.02
판단	기사조건(인정됨)	.14	.24	.32	1	1.15	.71-1.85	.57
	기사조건(인정안됨)	-.50	.24	4.24	1	.61	.38-.98	.04

-2LL=579.53, Nagelkerke R²=.03, $\chi^2=10.51(p=.015)$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제시받은 기사의 내용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라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은 후, 동일하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참가자와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가자로 나누어 각 집단이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받은 후, 동일하게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가자와 인정된다고 판단한 참가자로 나누어 자신이 내린 판단을 얼마나 적절했다고 인식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단, 기사를 제시받지 않은 무제시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사의 내용과 정당방위 판단이 불일치하면 1, 일치되면 2로 각 코딩하였다. 즉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불일치하게 판단하면 1,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일치되게 판단하면 2로 코딩하였다. 반면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된다고 불일치하게 판단하면 1,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일치되게 판단하면 2로 코딩하였다. 본인이 내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단이 얼마나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부터 7점(매우 적절하다)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후, 불일치와 일치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았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린 집단($M=4.52, SD=1.15$)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내린 집단($M=4.14, SD=1.24$)보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더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4, p=.02$).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받은 집단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M=4.71, SD=1.01$)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참가자($M=3.61, SD=1.25$)보다 자신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11, p<.001$). 즉, 제시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당방위는 인정 안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가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인정 안 된다는 기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집단($M=4.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자면, 참가자들은 법원에서 현재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인정 안 된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인정 판단을 감

표 4. 기사와 정당방위 판단에 따른 정당방위 판단의 적절성

기사조건	정당방위 판단	N	M(SD)	t	df	p
인정됨	인정안됨	114	4.52(1.15)	2.34*	223	.02
	인정됨	111	4.14(1.24)			
인정안됨	인정됨	85	3.61(1.25)	-7.11***	212	<.001
	인정안됨	129	4.71(1.01)			

* $p < .05$, *** $p < .001$

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어떠한 기사를 제공받는가와 무관하게 정당방위는 인정 안 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들이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가자의 적절성 판단은 증가시킨 반면 기사의 내용과 반대로 판단한 참가자의 적절성 판단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정 안 됨 내용의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판단자의 개인적 요인인 폭력 허용도와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에 폭력 허용도와 법적 태도를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에는 정당방위 판단을 투입하여 이를 유형에 따라 고찰하였다.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는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1,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경우를 0으로 각 코딩한 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와 정당방위 판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chi^2=.77$, $p=.68$), 폭력 허용도(OR=1.02, $p=.46$), 법적 태도(OR=.99, $p=.60$)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chi^2=4.98$, $p=.08$), 폭력 허용도는 정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 OR=1.05, 95% CI=1.00-1.10, $p=.03$). 즉 참가자의 폭력 허용도가 증가 할수록 정당방위를 인정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적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B=-.01, OR=.99, $p=.55$).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chi^2=9.32$, $p=.01$),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 OR=.94, 95% CI=.91-.98, $p=.005$). 즉 참가자의 법적 태도가 증가 할수록 정당방위를 인정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

표 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OR	95% CI	p
정당방위 판단	폭력 허용도	.05	.02	4.44	1.05	1.00-1.10	.03
	법적 태도	-.01	.01	.36	.99	.97-1.02	.55

-2LL=303.380, Nagelkerke R²=.022, $\chi^2=4.985(p=.083)$

표 6.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OR	95% CI	p
정당방위 판단	폭력 허용도	-.02	.03	.46	.98	.93-1.04	.45
	법적 태도	-.06	.02	7.82	.94	.91-98	.005

2LL=191.627, Nagelkerke R²=.042, $\chi^2=9.322(p=.09)$

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 허용도는 유의하지 않았다(OR=.98, $p=.50$).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인정 불인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과 일반인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형법 제정 이래 법원이 정당방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임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일반인의 법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성유리, 박광배(2012, 2013, 2018)의 선행연구 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심리학적이고도 주관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전개되므로, 법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의 특성으로 나누어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방위 유형별로 정당방위를 인정, 불인정하는 판단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의 인정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정 비율이 불인정에 비해 약 1.7배에 높았다. 반대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 불인정 비율이 인정에 비해 무려 4.6배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자기에게 처한 위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행위이므로 이를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서는 불인정 비율이 82.4%로 인정 비율에 비해 무려 4.6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시나리오의 자신을 위해 국가기관인 경찰관에 대하여 방위 행위를 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시나리오 상의 이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참가자들이 해당 유형을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 속하였다고 인식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고 하여도 그 인정 비율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과 유사하게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나,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고 침해행위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는 전혀 다르게 별개의 판단을 전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경우 정당방위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을 가지고 판단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들이 내리고 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오히려 법원에서 가장 높게 인정되고 있다(양천수, 2019). 본 연구 참가자들

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법원은 싸움에서의 정당방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양천수, 2019). 이 같은 결과는, 법원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일반인과 법원의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형사 실무상의 유형을 접목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과 일반인의 인정 판단에 괴리가 존재함에도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싸움’에 대한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법원의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언론의 보도 특히 신문기사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제시 받을 때 정당방위 인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나, 무의식중에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정당방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당방위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역시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기사들이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참가자들은 이미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보들을 토대로 정당방위 판

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생각과 부합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제공될 때 기사의 영향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당성 판단이 애매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참가자들은 기존에 정당방위에 대한 정보들을 떠올려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주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부정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Rozin & Royzman(200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 기사의 영향은 참가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의 존재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정당방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판단임에도 일반인으로서의 개별 법원의 태도를 법원의 일반적인 정당방위 태도로 인식하거나, 정당방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채 이러한 정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어떠한 기사를 제시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인정 안 된다고 판단한 참가자가 자신의 정당방위 판단이 적절했다고 높게 평정했다.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당방위에 관해 불인정 기사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생각과 일치되어서 불인정한 집단(M=4.71)이 인정한 집단(M=3.61)보다 적절성 판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증으로 인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가 제시되어도 기존의 심증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관계로 기사와 관계없이 정당방위를 불인정한 집단(M=4.52)이 정당방위를 인정

한 집단(M=4.14)보다 적절성 판단에서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번 믿음이 형성되면 그 후 자신의 믿음과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기존의 믿음을 바꾸지 않고 신념을 고수하는 Anglin(201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에 정당방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편향적인 태도, 판결과 언론 보도의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인의 편향적인 인식과 언론 보도는 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 법원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해석정책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폭력 허용도나 법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폭력행위를 정당화되는 행위로 인식하며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타인을 위해 폭력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이에 폭력 허용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과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높고, 높은 유죄편향을 보인다는 Narby, Culter와 Moran(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태도 질문지(LAQ)가 국가기관이 지닌 권위, 경찰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어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보다 이 같은 법적 태도라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배심원의 개인의 인성, 신념, 태도 등과 같은 배심원의 주관적 인적 요인들이 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mith, Bull, 2012). 이는 결국 정당방위 판단이 문제 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 혹은 배심원의 편견을 배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당방위 유형에 따라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방위 판단 전반을 아우르는 범인식으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법적 권위주의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판단자 개인의 주관적 요인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들이 정당방위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인적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시 고려해 볼 만한 요소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법원의 태도와는 유형별, 요소별로 모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

이 일반인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기존 학계의 지적과 같이 정당방위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 혹은 인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당방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의 판단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정당방위 유형간 비교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유형의 시나리오가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 간의 정당방위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전형적인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 보다 적합하므로, 본 연구는 유형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실제의 판례들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배심원의 인식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방위 유형 관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독자적인 유형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 같은 방법론이 일정 부분 적절하였음을 대변한다. 향후에는 시나리오 제작상의 한계까지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모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없었다. 정당방위에 대하여 유형화되거나 혹은 개인적·내적 요인을 살펴본 실증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모형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제반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나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같은 한계점은 향후 정당방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국에서 개발된 법적 태도 질문지(LAQ)는 국내에서는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도 0.608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때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많은 유형들을 포함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방위 행위자의 행위와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법학적 관점을 넘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꼭 필요한 분야로 생각되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통해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식 분석에 좀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공영호 (2016).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홍익법학*, 17(3), 451-473.
김경락 (2014).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소극적 방어행위의 인정여부. *중앙법학*, 16(4), 83-117.

김상준, 이진만, 신숙희, 장철익 (2010).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김성천 (1993). 정당방위와 법문화. *형사법연구*, 6, 96-119.
김슬기 (2017).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33(2), 27-43.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 가해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27-42.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김준호, 김선애 (1991).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219
김준호 (2016). 형법 제 21 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1(1), 197-222.
김병수 (2012).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형사법연구*, 24(4), 47-75.
김병수 (2014).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5(4), 45-68.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김효숙 (2010). 기업 관련 기사 유형별 공중 반응의 차이 세 가지 종류의 관여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4(4), 5-35.
김태명 (200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형사법연구*, 14, 137-160.
김태명 (2008).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2(1), 329-363.
박상기 (2009).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

- 박순진 (1998).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살인과 폭행·상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205.
- 박정난 (2018).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 도 2794 판결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 노 11 판결)-. *일감법학*, 41, 287-315.
- 성유리, 박광배 (2012).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개인/집단주의의 가치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3), 1-12.
- 성유리, 김종한, 박광배 (2013).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범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69-83.
- 성유리, 박광배 (2018).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 일본, 미국 범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9(2), 101-116.
- 안서원 (2000). *의사결정의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양천수 (2019). 범문화와 정당방위-판례의 정당방위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서강법률논총*, 8(2), 25-50.
- 이원상 (2015).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 444 판결을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7(2), 177.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7).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현미 (2000). 싸움과 정당방위. *법학논집*, 5(1), 167-182.
- 최석운 (2010).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59-280
-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박순진, 박형민 (2005).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민경 (2018).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 하민경, 서용성, 김성화 (2019).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 하민경 (2020).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 홍진표 (2017).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 황정의 (2009).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이론 남용의 문제점. *경찰학논총*, 4(1), 91-122.
- Anderson, C. A., Benjamin Jr, A. J., Wood, P. K., & Bonacci, A. M. (2006).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Velicer attitudes toward violence scale: Evidence for a four factor model.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22-136. doi:10.1002/ab.20112
- Anderson, C. B. (2012). *Inside Jurors' Minds: The Hierarchy of Juror Decision-Making*.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 Anglin, S. M. (2019). Do beliefs yield to evidence? Examining belief perseverance vs. change in response to congruent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2, 176-199.
- Boehm, V. R. (1968). Mr. Prejudice, Miss Sympathy, an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n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measuring techniques to the problem of jury bias. *Wis.*

- L. Rev., 734.
- Carlo, G. (2006). Care-based and altruistically-based morality. In M. Killen & J. G. Smetana(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551-579). Mahwah, NJ: Erlbaum.
- Carlo, G., Eisenberg, N., & Knight, G. P. (1992). Anobjective measure of adolescents' prosocial moral reas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331-349.
- Clark, R. D., & Word, L. E. (1974). Where is the apathetic bystander?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3), 279-287.
- Couch, J. V., & Sundre, D. L. (2001). Legal Attitudes Scale: A Factor Analytic Stud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2).
- Cowan, C. L., Thompson, W. C., & Ellsworth, P. C. (1984). The effects of death qualification on jurors' predisposition to convict and on the quality of deliberation. *Law and Human Behavior, 8*, 53-79.
- Dennis, E. E., & Merrill, J. (1996). *Journalism as a profession. Media debates: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White Plain, New York: Longman.
- Forrest, B. (1993). How We Know What Isn't So: The Fallibility of Human Reason in Everyday Life. *Teaching Philosophy, 16*(2), 185-187.
-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Macmillan.
- Meffert, M. F., Chung, S., Joiner, A. J., Waks, L., & Garst, J. (2006). The effects of negativity and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during a political campaign.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27-51.
- Moran, G., & Comfort, J. C. (1982). Scientific juror selection: Sex as a moderator of demographic and personality predictors of impaneled felony juror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1052.
- Narby, D. J., Cutler, B. L., & Moran, G. (1993). A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jurors' perceptions of defendant culpabi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34.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doi:10.1177/ 088626097012004005
- Ross, S. J., & Morera, O. F. (2016). Comparing legal attitudes of Anglo-and Latino-Americans: Confirm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4*(3), 195-212.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0.
- Ruva, C. L. (2010). *How pretrial publicity affects juror decision making and memory*. Nova Science Publishers, Incorporated.
- Sales, B. D., & Krauss, D. A. (2015). *The psychology of law: Human behavior, legal institutions, and law*.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mith, L. L., & Bull, R. (2012). Identifying and measuring juror pre-trial bias for forensic evidenc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orensic Evidence Evaluation Bias Scale.

- Psychology, Crime & Law*, 18(9), 797-815.
- Snyder, M., & Swann, W. B. (1978). Hypothesis-testing processe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1), 1202.
- Tewksbury, D., Jones, J., Peske, M., Raymond, A., & Vig, W. (2000). The interaction of news and advocate frames: Manipulating audience perceptions of a local public policy issu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804-829.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1), 3-14.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 Valkenburg, P., Semetko, H., & DeVreese, C.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 550-569.
- 1 차원고접수 : 2021. 05. 31.
심사통과접수 : 2021. 06. 29.
최종원고접수 : 2021. 07. 25.

The Effects of Self-Defense Categories,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ck Jurors on the Self-Defense Judgment

Yong ae Kim

Min 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he lay people judge self-defense and what factors could affect it. A total of 651 participants aged 20 years and over were asked to answer,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questionnaire, all divided by the type of self-defense. Participants were assigned one of the three types of situations that were claimed to be self-defense, and were given articles and scenarios related to each type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self-defense judgments. In addition,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on self-defense judgment was analyzed after the legal attitude, and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which are personal factors,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the highest in the type of self-defense for oneself, but the rate of denial of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was much higher, indicating the opposite. Furthermore, negative articles on self-defense were found to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of individual participants could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The general public's judg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elf-defense judgment may be considered to prevent biased judgment in actual jury trials. Finally, influ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f subsequ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elf-defense judgment, categories of self-defense,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violence tolerance,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LAQ)